

## 12. 19(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보도자료

- ▶ 위기관리대책추진단  
단장 김유진 서기관 2110-7155
- ▶ 고용서비스지원과  
황선범 사무관 2110-7145  
김호현 사무관 2110-7142

- ▶ 2008. 12. 18(목) 배포
- ▶ 총 쪽 (사진없음)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지급확대 및 특별연장급여 지급방안 등 추진”

### <최근 고용동향>

#### □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청 현황

- 실업급여 수급자가 11월 하순부터 전년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특히, 고용사정의 어려움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적 지표 성격이 있는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경우 고용유지 계획서 접수가 11월 이후 급속히 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수 증감 추이>

	11월				12월			
	1째주	2째주	3째주	4째주	1째주	2째주	3째주	4째주
2008	13,042 (15.6)	14,628 (11.4)	19,367 (32.8)	17,109 (38.6)	16,823 (35.0)	16,256 (24.0)		
2007	11,278	13,136	14,582	12,342	12,462	13,106	11,957	11,887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10월	469	44	196	58	105	25	41
11월	1,329	47	496	172	383	146	85
12.1~5	1,075	55	224	158	440	126	72
12.8~12	1,048	57	271	250	331	60	79

#### □ 기업의 대응

- 최근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 부진에 따라 일부 정리하고, 희망 퇴직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있으나,
  - 대부분 아직은 비용절감, 야간·휴일 근로 중단, 임금동결, 집단 연차사용, 휴업 등을 실시하면서 감원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주고 있다
  -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감산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들도 고용유지를 위한 동반 휴업을 많이 실시 하고 있다

#### <고용안정대책>

- 이에, 노동부는 실업예방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이미 발표한 고용 유지원금 상향 조정 등 고용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기업의 고용유지노력 지원을 위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고용유지원금이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개별연장급여는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최고 60일간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발생으로 재취업 및 생계가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최고 60일간의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IMF당시 한시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 이르면 내년 3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날 이영희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위기에서 우리가 경험 했듯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 하고

○ “실직자에 대한 생계유지와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참 고 >

**실업급여 신청자 월별 추이**

(단위: 명,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	94,247	61,003	73,241	71,406	60,298	61,035	74,507	56,375	59,226	68,138	66,247	
[증감]	[10,720]	[5,624]	[9,867]	[13,592]	[6,499]	[11,488]	[13,892]	[4,880]	[14,164]	[7,317]	[10,419]	
(증감률)	(12.8)	(10.2)	(15.6)	(23.5)	(12.1)	(23.2)	(22.9)	(9.5)	(31.4)	(12.0)	(18.7)	
2007	83,527	55,379	63,374	57,814	53,799	49,547	60,615	51,495	45,062	60,821	55,828	50,504

**기업규모별·업종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접수 현황**

< 2008. 12. 1 ~ 12.12 >

업 종	계(%)	제조업	건설업	농림 수산업	도소매업	금융 보험	서비스업 등 기타
30인미만	1,525 (70.9)	1,400	25	-	31	-	69
30~100인미만	448 (20.8)	415	1	-	3	-	29
100인~300인미만	138 (6.4)	133	1	-	-	-	4
300인이상	41 (1.9)	36	1	-	1	-	3
계	2,152 (100)	1,984 (92.2)	28 (1.3)	-	35 (1.6)	-	105 (4.9)

**기업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현황('08.11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5인 미만	5인-9인	10인- 29인	30인- 49인	50인- 69인	70인- 99인	100인- 149인	15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999인	1000인 이상
건수	3,807	739	861	1,260	445	160	129	89	91	13	7	13
인원	78,471	2,723	4,937	15,397	10,806	6,327	6,407	6,595	11,611	1,346	1,230	11,092
금액	27,800	1,525	2,775	6,198	3,743	1,977	1,768	1,940	2,792	467	473	4,266
비율	100	5.5	10.0	22.1	13.5	7.1	6.3	7.0	9.8	1.7	1.7	15.3
(비율)	100			64.5				16.8		18.7		

※ 비율은 금액기준임

## 개별 및 특별연장급여 개요

### 1. 개별연장급여

- 제도취지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 지급
- 지급요건(동시 충족)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②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업을 위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③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 \* 급여기초임금일액,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 기준
  - i)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일 것
  - ii)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일 것
  - iii)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

### ○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08.10		'07		'06		'05	
	인원	지급	인원	지급	인원	지급	인원	지급
개별연장급여	187	269	615	812	545	658	251	239

- 지급 수준 : 구직급여 일액의 70%, 60일 이내

### 2. 특별연장급여

- 제도취지
  -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특별연장 지급
- 지급요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어느 하나)
    - \* 매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의 수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 3개월동안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 \* 매월 말일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 매월 말일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 특별연장급여 실시기간 :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
- 지급수준 : 구직급여일액의 70%, 60일 이내
- 지급사례(IMF 당시)
  - 1차 특별연장 : 1998. 7.15 ~ 1994. 1.14. (5인 이상 적용)
  - 2차 특별연장 : 1999. 1.15 ~ 1999. 6.30. (1인 이상 적용)
  - 3차 특별연장 : 1999. 7. 1 ~ 1999.12.31.